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32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진선미·이학영·임오경

김문수 · 문정복 · 이기헌

조승래 · 강경숙 · 송재봉

이용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고 시·도 및 시·군·구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칙에 규정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재원에 대한 걱정없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법률 제 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		
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	<u><</u> 삭 제>		
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			
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u>다.</u>			